문서번호
 장애인자립지원과-3594
 주무관
 장애인거주시설팀장
 장애인자립지원과장
 복지정책관
 복지건강실장

 결재일자
 대시민공개
 협조
 보험번호
 변설
 보기건강실장
 보기건강실장

2013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

2013. 3.

복 지 건 강 실

(장애인자립지원과)



▶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비랍니다.

검토항목		검	토 여 부 (■ 표시)	
	• 시	민 :	유 🗆 (무 ■
시 민 참 여	• 이 해 당 사	자 :	유 ■ (장애인주간,단기시설 연합회	무□
고 려 사 항	• 전 문	가 :	ਜ □ (무■
	● 옴 브 즈	만 :	ள □ ()	무 ■
	● 법 령 규	정 :	교통 🗌 환경 🗌 재해 🗌	
			기타 ■ (장애인복지법 제81조)	무 🗆
법령및기타	• 기 타 사	항 :	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□	
고 려 사 항			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■ 디자인 □	
			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	무 🗆
	• 중 앙 부	처 :	유 🗆 (무 ■
타자원의활용	• 민 간 단	체 :	유 □ ()	무■
	• 기	업 :	유 🗆 (무■
	● 관 계 기	관 :	ត □ ()	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_ 협 의	• 민 간 단	체 :	유 □ ()	무■
	• 시 산 하 기	관 :	유 🗆 (무■

2013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

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사업개요

□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(비용의 보조)
-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과제 4-1(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)
-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운영 활성화계획('12.7)

□ 시설운영 개요

○ 시설현황 : 105개소 1,456명

○ 이용인원('13,1.1.기준)

구분	계	8명	9명	10~15명	16~20명	21명이상
시설수	105개소	2개소	6개소	72개소	18개소	7개소

○ 구별 현황('13.1.1.기준)

구분	1개소	2개소	3개소	4개소	5개소	6개소	7개소 이상	미설치 자치구
자치구	중랑구	종로구 서대문구 관악구	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금천구	중 구 용산구 강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	양천구 구로구	은평구 강남구	서초구7 송파구7 강서구8 노원구14	동대문구 성북구

○ 이용대상

-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
- 장애 유형·성별은 시설 특성에 맞춰 자체 선정

○ 지원기준
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에 의거 설치된 시설
-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 법인 운영 시설

○ 운영목적

-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며 재활 교육
-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구성원 사회활동 지원

□ 주요사업

○ 재활치료사업

- 물리, 작업치료 및 일상 동작 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 배양
- 여행,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
 -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 실시
 -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도모

○ 교육지도

-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·인지 및 사회생활 교육

이기 타

-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

Ⅱ 추진실적







○ 연도별 예산 현황(시비 100%)

(단위: 천원)

계	2008	2009	2010	2011	2012
39,364,355	7,020,950	7,406,215	7,412,815	8,342,036	9,182,339

○ 연도별 시설 확충

계	2008	2009	2010	2011	2012
신규 확충	9	9	5	5	5
시설수	81	90	95	100	105

□ 2012년 주요 추진실적

○ 예산지원 : 9.138.939천원(105개소)

○ '12년 주간보호시설 5개소 확충 : 100개소 ⇒ 105개소 (5개소 介)

구분	운영법인	시설명	소재지	이용자 유형	이용자수
2월 신규지원	사복)기아대책	우리마포	마포구 신촌로 26길 10	뇌병변, 지적	11
2월 신규지원	렘넌트복지재단	렘넌트	송파구 장지동 214-2	지적, 뇌병변	10
7월 신규지원	실로암복지재단	실로암	관악구 조원로 127 - 2	시각	11
10월 신규지원	갑을복지재단	갑을	관악구 조원로 168 3층	지적, 뇌병변	11
10월 신규지원	꿈꾸는 교회	꿈터	관악구 청룡동 919-32	지적, 자폐	11

- 2012년 5개소를 신규 확충 하였으며 현재 105개 시설에서 1,456명이 이용 중으로 시설당 이용자는 평균 14명임
- 단독 시설장 처우개선(4~5급 → 3급 대리까지 지원)
 - 타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지 않고, 시설 신고시 시설장으로 등재된 자로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인력지원(3명)범위 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3급 대리까지 보조금으로 지원
 - 인건비 차액을 법인의 부담으로 하던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

○ 주간보호시설 평가실시

- 대상시설 : 주간보호시설 97개소

- 기 준 : 2011.1.1.이전 설치 운영시설

- 평가내용 : 시설 운영평가 및 이용인 만족도 조사

- 평가방법 및 절차
 - · 2012년 개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시설 자체평가 후 현장평가
 - ㆍ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이용인 만족도 조사 실시
- 평가결과

(단위: 개소수, 점)

유 형 구 분	2009 주간보호시설 (독립)	2012 주간보호시설 (독립)	2009 주간보호시설 (병설)	2012 주간보호시설 (병설)	2009 단기거주시설 (독립·병설)	2012 단기거주시설 (독립·병설)
개 소	36	61	36	36	18	29
최 소 값	35.00	35.22	59.10	59.14	33.45	54.21
최 대 값	91.12	99.29	95.91	99.87	94.65	100
평균	68.49	78.18	85.11	91.59	73.52	80.29
표준편차	15.85	15.51	9.17	8.49	17.68	14.42

-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: 19,500천원
 - · 산출근거 : 주간보호시설 13개소 × 종사자3명 × 50만원/1인
- 부진시설 관리
 - ㆍ 기준(60) 점수 미만시설(11) 품질개선 과제 부여 및 개별 관리
 - ㆍ 개선과제 수행 후 재평가 실시(서울시 복지재단 별도 계획)

Ⅲ '13년 사업계획

□ 사업목표

- 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
-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정상화를 위한 소규모 시설의 지속적 확충
- 평가 결과 부진 시설 관리 및 피드백을 통한 운영 개선 지원

세부추진계획

- 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 개선
- 주요 개선사항

구분	근무인원 (명/시설)	'12년 지급 기준	'13년 개선안
주간 보호시설 110개소	3명	 • 인건비 ▶ 시설별 3명 종사자 평균 호봉 산출 후 기준호봉에 따라 지급 ● 운영비(사회교육비 포함) ▶ 2,000천원 	 • 인건비 ▶ 시설별 3명 종사자 실제 호봉에 따라 지급 ▶ 단독 시설장 4급 기준 • 운영비(사회교육비 포함) : 2,000천원 ※ 인건비와 분리

- 인건비 지급기준 : 각 시설별 종사자 실제 호봉에 따라 지원
- ② 신규시설 5개소 확충 : 105개소('12년) ⇒ 110개소('13년)
- 시 기 : 상반기 3개소, 하반기 2개소
- 방 법 : 법인에서 구청에 설치·신고 ⇒ 적정 운영 시설 보조금 지원
- ※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법인 운영 시설만 지원 가능
- ③ 시간연장 및 최중증 장애인 전용시설 인증제 시행 별도계획
- 연장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(신규)
 - 장애인 보호자의 보호부담 경감과 안정된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아침, 저녁 및 토요일에도 연장 운영
 - 연장시간 : 평일 08:00 ~ 22:00, 토요일 09:00~18:00
- 최중증 장애인 전용시설 운영(신규)
 - 최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리고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중증 장애인 전용시설(정원의 100%) 확충
- 인증제 도입을 통한 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도모

④ 시설 운영평가 결과 부진시설 관리 및 품질향상 지원

○ 대 상 : 평가 결과 60점 미만 부진시설 11개소

○ 방 법 : 품질관리단의 자문 및 모니터링 후 품질향상 평가

○ 일 정

- 품질향상 사업 설명회 : 2013. 3월

- 자체 품질개선 계획 수합 및 검토 : 2013년 4~5월

- 품질 관리단 구성 및 사후 관리활동 수행 : 2013, 2~10월

- 개선성과 평가 : 2013. 11~12월

※ 품질향상 지원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시설은 '14년 운영계획 수립시 보조금 삭감. 지원중단 등 조치

⑤ 이용자 관리 DB 구축

○ 목 적 : 시설 이용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

○ 방 법 : 장애인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

○ 일 정 : 3월 ~ 4월 (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입력)

○ 대 상 : 공동생활가정,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이용자

⑥ 시설 지도 : 감독 강화

○ 시설 운영 실태 점검 강화 ⇒ 방만하게 운영시 보조금 환수 등

- 시 기 : 2013년 3 ~ 4월 중 시설 지도·점검 실시

- 방 법 : 점검단 2개조 구성으로 주간 보호시설 이용 실태 확인

- 조치계획 : 실 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정해진 인원의 종사자를 장기간 고용하지 않거나, 주간보호시설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

이용자수가 적을 시 보조금의 일부 환수 등 조치

○ 상시 시설 자체 점검 체제 운영

- 시 기 : 2013년 5월 중 자체점검표 시달

⇒ 이용실태 점검으로 시설 운영상황에 적합한 표준 점검항목을 개발하여 시달

- 방 법 : 자체점검표를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배부하여 상시 자체 점검 - 기대효과
 - 시설 스스로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상향평준화 하고 규정 위반소지를 사전에 예방
 - 자체 점검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운영 개선 기회 부여로 시설 운영 내실화

Ⅳ '13년 예산집행 계획

□ 2013년 예산집행 계획 :10,567,439천원

(단위 : 천원)

계	인건비	운영비	종 사 자 복지수당	자격수당	인증시설지원
10,567,439	9,444,829	220,000	592,305	111,105	199,200

○ 인건비 : 9,444,829천원(신규확충시설 5개소 10% 37,808천원 감 반영)

시설당 종사자 호봉 평균	시설수 (개소)	종사자 수(명)	1인 인건비 지급 기준(원)	연간 지급액(원)	비고
계	110	330		9,482,637,483	
2호 봉	2	3	25,823,492	154,940,952	
3호 <u>봉</u>	17	3	26,508,232	1,351,919,832	
4호 <u>봉</u>	23	3	26,980,469	1,861,652,361	
5호봉	15	3	27,733,293	1,247,998,185	
6호봉	9	3	28,725,985	775,574,595	
 7호봉	14	3	29,645,842	1,245,125,364	
8호봉	15	3	30,425,029	1,369,126,305	· 신규 시설 3호봉 적용
9호봉	5	3	31,369,498	470,542,470	
 10호봉	3	3	32,149,684	289,338,156	
11호봉	2	3	33,188,600	199,125,600	
12호 봉	1	3	33,707,058	101,121,174	
13호봉	3	3	34,391,797	309,526,173	
15호 봉	1	3	35,548,772	106,646,316	

- O 운 영 비 : 220,000원
 - 1개소당 연 2,000천원(110개소 기준)
- 종사자 복지 수당 : 592,305천원
 - 5년 이상 190천원/월. 5년 미만 135천원/월
- O 자격수당: 111.105천원
 - 자격수당 : 월 30천원, 기타수당 월 20천원
- O 인증시설 지원: 199,200천원
 - 인증시설 6개소(시간연장 3. 최중증전용 3)
 - ✓ 환경개선비 6.000천원×6개 = 36.000천원
 - ✓ 운영비추가 2,000천원×6개 = 12,000천원
 - ✓ 종사자 지원 25,200천원×6개 = 151,200천원

□ 보조금 지원방법

-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하고 집행 후 잔액 반납 조치
- 집행 방법 : 시 ⇒ 자치구 ⇒ 시설(분기별 신청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)

Ⅴ 행정사항

- 세부운영계획 제출,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: 시설 → 자치구
 - 매분기 개시 전월 9일까지
- 분기별 사업비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: 자치구 → 시
 -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
-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: 시 → 자치구
 -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: 다음연도 2월말까지

○ 주간보호시설 협조사항

- 장애인 인권헌장 등 인권보장 관련 자료 시설내(거실) 게시
- 인권침해 상담·조사 신청 안내문 시설내(거실) 게시

── 〈 인권침해 상담·조사 신청 안내(안) 〉

■ 인권센터 접수/상담실

- 위치 :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내 인권센터(2133-6378/9)

■ 신청방법 : 문서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, 홈페이지, 전화

- 주 소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 1가 31번지)

- 전 화 : 2133-6378/9, 팩스 : 2133-0797

- 이메일 : <u>sangdam@seoul.go.kr</u>

- http://www.seoul.go.kr/v2012/oneclick/

붙임 2013년 시설별 인건비 산정 종사자현황표 1부